2021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
참여자 모집 공고(추가2차)

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은 **'2021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'**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.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▢ **근무기간 :** 2021년 8월 ~ 12월(5개월)

▢ **근무시간 :** 월 ~ 금 9:00~15:00 (1일 5시간, 주 25시간 근무)

※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

※ 12월 근무시간 조정 : 주 25시간 → 주 23.5시간 (사업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)

※ 상세 근무시간은 근무 배치장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▢ **근무내용 :**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

(식사보조, 간식보조, 이동보조, 프로그램보조, 환경정리 등)

▢ **근 무 지 :** 부산진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, 요양병원

*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

▢ **보 수 :** 8월-11월 1,142,320원, 12월 1,068,510원

*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

*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*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▢ **모집인원 :** 2명

▢ **모집기간 :** 2021년 7월 1일 (목) ~ 2021년 7월 9일 (금), 9:00 ~ 18:00(주말 제외)

▢ **면접일시 :** 2021년 7월 14일 (수) (자세한 일시는 차후 개별통보)

▢ **접수방법 :**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(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)

▢ **접 수 처 :**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4층 407호 사무실

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 / 051-808-8190 / 직업지원팀 김진영 대리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**신청자격 :** 만 18세 이상 **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**

▢ **선발방법 :**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▢ **선발기준**

- 출퇴근 스스로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
-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
-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
-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
-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

4. 제출서류

▢ 공통 제출서류

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8]

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
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[서식9] 제출 필요

▢ 선택 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증빙서류</th></tr>
<tr><td>자격증 소지자</td><td colspan="3">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</td></tr>
<tr><td>졸업예정자</td><td colspan="3">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여성가장</td><td>구 분</td><td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d></tr>
<tr><td>배우자 무(無)</td><td colspan="2">가족관계등록부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배우자 유(有)</td><td>가출 · 행방불명</td><td>실종신고서</td></tr>
<tr><td>장애</td>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
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</tr>
<tr>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<td>의사의 진단서</td></tr>
<tr><td>군복무</td><td>복무확인서</td></tr>
<tr><td>학교 재학</td><td>재학증명서</td></tr>
<tr><td>교도소 입소</td>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</tr>
<tr>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
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
확인서</td></tr>
<tr><td>이혼소송 제기</td>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</tr>
<tr><td>취업지원대상자</td><td colspan="3">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※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2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/td></tr>
</table>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※ 여성가장 정의

가. 이혼, 사별(死別)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

나.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

다.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(世帶)를 같이하는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, 질병, 군복무 및 재학(在學)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

라.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※ 관련근거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,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5. 기타 참고사항

▢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이후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

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 - 24세 이하(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 -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
▢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 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“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▢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▢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‘커뮤니티’-‘공지사항’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(051-808-819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28일

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장